

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980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9월 15일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,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법령의 정의에 맞춰 용어를 정비함(안 제2조제10호, 안 제8조의3).

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0호 중 “방사능 등 유해물질”을 “유해물질”로 한다.

안 제8조의3 본문 중 “방사능 등 유해물질”을 “유해물질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〈 신·구 조문대비표 〉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“<u>방사능 등 유해물질</u>”이란 「<u>농수산물 품질관리법</u>」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.</p> <p>제8조의3(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노력) 시장은 학교 등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<u>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“<u>유해물질</u>”이란 「<u>농수산물 품질관리법</u>」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.</p> <p>제8조의3(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노력) 시장은 학교 등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<u>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“유해물질”이란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.

안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노력) 시장은 학교 등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〈 신 · 구 조문대비표 〉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“유해물질”이란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.</p> <p>제8조의3(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노력) 시장은 학교 등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